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. 7. 9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6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6월 23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96회 영등포구의회 (2003년도 제1차 정례회)
제1차 위원회(2003년 7월 2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홍성배)

가. 개정이유

- 영등포구의회 제95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·군·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부칙중 적용시기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로 개정하려 하였으나
-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(2003.4.15 개정)의 부칙 개정내용은 적용시기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.11.29 이후로 소급 적용토록 함으로써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부칙 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부칙 제2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적용일을 “이 조례 시행일 이후”에서 “2002.11.29일 이후”로 하며
- 부칙 제4항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일을 “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”에서 “2002.11.29일 이후”로 소급 적용토록 개정

다.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, 제100조, 부칙
-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, 부칙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홍수)

본 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 제22조의2(대부료등에 대한 특례)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“사용·수익” 하는 경우를 “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”하는 경우로 개정하고, 부칙 제②항의 “이 조례 시행일”을 “2002년 11월 29일”로 개정하고 부칙 제④항의 “이 조례를 공포한 날”을 “2002년 11월 29일”로 개정하려는 것으로

본 개정(안)의 주요내용은 제22조의2(대부료등에 대한 특례) 제①항의 본문 내용중 “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”하는 용어가 상이하여 이를 용어가 맞는 단서조항의 용어로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이며, 부칙의 제②항 및 제④항의 개정내용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부칙 적용시기를 일치시켜 일관성을 기하고,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6. 2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 이유

- 영등포구의회 제95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·군·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부칙중 적용시기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로 개정하였으나
-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(2003.4.15 개정)의 부칙 개정내용은 적용시기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.11.29 이후로 소급 적용토록 함으로써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부칙 제2항 및 제4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부칙 제2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적용일을 “이 조례 시행일 이후”에서 “2002.11.29일 이후”로 하며
- 부칙 제4항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일을 “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”에서 “2002.11.29일 이후”로 소급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임.

3. 관련 근거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, 제100조, 부칙
-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, 부칙

첨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 제1항중 “사용·수익”을 “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”로 한다.

부칙 제2항중 “이 조례 시행일”을 “2002년 11월 29일”로 하고, 부칙 제4항중 “이 조례를 공포한 날”을 “2002년 11월 29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행	개정 (안)
제22조의2(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) ①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<u>사용·수익</u>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(사용료·변상금을 포함한 다. 이 조에서 이하 같다)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%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다만, 영리목적(농경지 제외)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22조의2(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) ① <u>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</u>
부 칙	부 칙
① (생략) ② (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) 제21조제1항·제2항·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<u>이 조제 시행일</u>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. ③ (생략) ④ (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례) 제27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<u>이 조제를 공포한 날</u>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.	① (현행과 같음) ② (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) <u>2002년 11월 29일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(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례) <u>2002년 11월 29일</u>